

퇴직급여 체불 실태 : 임금체불 신고 DB*

길 현 중**

본고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임금체불 신고 DB를 통해, 기존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던 퇴직급여제도의 체불 현황을 제도 종류별 특성과 격차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았다. 먼저 제도 종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비해 체불 신고 건수나 총액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산·폐업 이전 단계에서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퇴직연금이 체불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도라는 통념을 증명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격차와 관련하여, 퇴직급여 체불 신고 규모 증itt값은 6백만 원이 되지 않았으며, 그 분포에 있어 소액 체불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용한 자료로 분석해 보면, 이들 퇴직급여 체불자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증itt값은 3백만 원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신고 체불액은 다른 요소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기업 규모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불 격차의 존재, 즉 퇴직급여제도의 체불을 경험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소규모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체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1. 연구 개요

임금체불은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서는 이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labor.moel.go.kr). 최근 체불임금 혹은 임금체불 문제가 주

* 이 글은 2024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길현중 외(2024), 『퇴직급여제도 현황과 인식 : 수준과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 중 제3장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yeonjongkil@kli.re.kr).

목받고 있다. 언론사 기사량이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건수만을 확인해 보아도 최근 2년간의 양적 수준이 그 전해에 비해 두 배 이상임이 확인된다(www.bigkinds.or.kr; www.moel.go.kr).

그 명칭상 임금체불과 퇴직급여제도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사실 이들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역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labor.moel.go.kr). 그뿐만 아니라 체불 문제는 퇴직금제도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한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고용노동부, 2024; 임무송, 2020). 여러 해 누적되어 한 번에 지급되는 퇴직금의 특성상 체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금체불 전체 중에서 퇴직급여제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기존 임금체불 연구를 통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비중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체불 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9.5%임이 확인된다(임무송, 2020). 즉,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임금체불은 퇴직급여제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체불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 영역에서 체불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앞서 일부 연구에서 제시한 체불 규모 등이 최근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조차도 충분히 알려진 바가 없다. 아마도 이는 퇴직급여제도 영역을 임금 체불의 부수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는 통념과 더불어, 자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 혹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즉, 퇴직급여제도 체불의 최근 실태 및 기존에 제시되지 못했던 새로운 실태를 제시하여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물론 이 실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 논의 가능한 다양한 주제가 존재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본고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전성과 체불 격차라는 논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불에 있어 연금형 제도의 안전성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성이 실재하는지를 본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널리 알려진 특징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려하면, 퇴직급여제도 체불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이 두 주제가 제도 체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주제들임은 분명하나 이들만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점, 두 논점 선정이 연구자의 주관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본고의 한계임을 미리 밝힌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논점으로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임금체불 신고 자료 DB를 고용노동부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자료를 활용해 퇴직급여제도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퇴직급여제도 임금체불 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임금체불 발생 시 처리 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관리되는 임금체불 신고 자료 DB를 활용한 2023년 퇴직급여 체불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임금체불 신고 처리 절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 이에 임금, 상여금, 다양한 항목의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다양한 형태의 임금이 이 임금체불 영역에 포함된다. 이에 더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급여제도 또한 이 영역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labor.moel.go.kr).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제5항, 제25조 위반으로 처리되는 사건으로 규정하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김증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 자료에 나타난 체불 근거 법률 거의 전부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급된 조문들에는 사용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9조에는 사용자 퇴직금제도 설정 의무를, 제17조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지급 의무를, 제20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납입 의무를, 제25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납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증호(2020)에 의하면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신고 건수가 많은 조항이 제9조, 즉 퇴직금이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크게 진정과 고소 두 가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이 진정과 고소를 위해 개인은 고용노동부 지방 소속기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labor.moel.go.kr).

근로감독관이 진정신고를 받으면, 진정인과 피진정인 조사를 진행하여 피진정인의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지시를 한다. 그리고 이 시정지시가 미이행되면 형사입건, 수사 착수, 검찰 송치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labor.moel.go.kr). 근로기준법에는 제36조 금품 청산 규정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도 퇴직급여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다만 양 법률에 공히 벌칙으로 이어지기 위한 공소제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한편 일선 단위 처리에 있어 근로감독관은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1항). 위 신고 사건 처리에 추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이 자금의 어려움으로 청산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같은 법률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확인하고, 제도 중에서 특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신고인의 체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연이자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신고, 지도 해결, 사법처리, 처리 중 현황자료 정도를 공개하고 있다(www.moel.go.kr).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노동관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연도별로 20만 건을 기준으로 오르내림이 있으며, 신고 근로자 수로 보면 30만 명을 기준으로 오르내림이 있음이 확인된다. 신고 금액 자체는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185,211건, 275,432명이 고용노동부 지방 소속기관에 신고했으며, 그 금액은 1조 7,845억 원에 이른다. 당연한 말이지만 해당 자료만으로 임금체불, 특히 퇴직급여제도 체불 관련 실태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Ⅲ. 퇴직급여제도 임금체불 실태

1. 활용 데이터 : 임금체불 신고 DB

본 연구를 위해 확보한 자료는 임금체불 신고 행정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DB 중에서도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신고 기준 자료를 핵심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DB는 크게 두 자료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신고자별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체불 항목별 자료이다. 신고자별 자료는 개인별 전체 체불 현황을 볼 수 있으며, 항목별 자료는 신고자별 자료에 포함된 세부 체불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별 자료를 통해서는 개인별 전체 총액이나 퇴직금 총액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세부 퇴직급여제도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체불 종류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세부 퇴직급여제도의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신고자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신고자별 자료에 체불 항목별 자료 중 퇴직급여제도 관련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 DB를 구축했다.

체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공식 건수가 존재하지만, 행정 DB의 특성상 DB 추출일이나 기준에 따라 전체 건수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료의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극히 소수이긴 하나 때로는 행정 입력상의 오류로 인해 부정확하다고 추측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정보 또한 존재한다. 이 역시 행정자료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의 결과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큰 틀에 있어 경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자료는 2024년 하반기에 추출되었는데, 신고자별 DB로 보면 전체 자료 수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수인 275,432건보다 약간 적은 273,196건이었다. 분석은 기술 분석 위주로 수행하되, 회귀분석도 활용해 필요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보기도 했다.

2. 분석 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 DB를 결합하기 전 신고자별 DB만을 살펴보면, 해당 DB에 있는 2023년 신고 처리된 임금체불 발생액은 총 1조 7,845억 원으로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공식 금액과 동일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임이 검증된다. 이 중에서 임금은 약 9천7백억 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로 나타났으며, 퇴직금의 경우 약 6천8백억 원, 전체 체불 금액의 38.3%로 나타났다. 퇴직금의 비중은 기존 연구에서 보여준 2018년과 유사한 수준임이 확인된

다(임무송, 2020).

전체 중에서 임금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고된 경우만 보면 건당 평균 금액은 퇴직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액 없음 제외 참고). 신고된 경우 임금은 건당 평균 약 4백만 원, 퇴직금은 건당 평균 약 9백만 원의 체불금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치를 고려해 확인한 중위값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퇴직금의 누적적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퇴직금 체불 건당 금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기타 항목에는 임금이나 퇴직금 이외에 다양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해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이외의 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재해보상, 연차수당, 상여금, 그 외 기타 수당 등이다. 이 중에서 일부 수당은 임금과 합쳐서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구성한다. 전체 비중이나 건별 금액 모두에서 다른 체불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표 1〉 신고자별 DB 체불 금액 구분

(단위: 건, 억 원, 원)

		전체	임금	퇴직금	기타
전체 : 금액 없음 포함	신고건수(건)	273,196	273,196	273,196	273,196
	합계(억 원)	17,845	9,746	6,838	1,261
		100.0%	54.6%	38.3%	7.1%
	평균(원)	6,532,051	3,567,532	2,503,122	461,397
금액 없음 제외	신고건수(건)	273,196	223,331	76,308	34,984
	평균(원)	6,532,051	4,364,085	8,961,616	3,603,125
	중위값(원)	3,240,000	2,466,373	5,699,638	1,673,850

주 : 금액 없음 제외 신고 건수는 해당 급여가 포함된 신고 건수를 의미함.

자료 : 임금체불 신고 DB.

이 신고자별 DB에 체불 항목별 DB 중 다른 퇴직급여제도 체불 관련 정보를 결합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미상의 이유로 행정 DB 분석에서 자주 나타나는 두 DB 연결 시 발생한 극소수의 미결합 자료를 제외하고, 전체의 98.9%의 체불 항목별 DB를 신고자별 DB에 결합할 수 있었다. 체불 항목별 자료에 포함된 근거 법률 정보를 확인해 보면 관련 퇴직급여제도 모두 퇴직연금제도이기에, 이하에서는 해당 항목을 퇴직연금제도로 명명할 것이다. 결합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3년 체불로 신고된 퇴직연금 총액은 약 452억 원, 전체 체불 신고액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퇴직금과 합친 퇴직급여제도 체불액이 전체 체불 신고액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것이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체불 총액을 비교해 보면, 1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통계청, 2023), 해당 실태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급여제도가 체불 문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일정 정도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의 경우 신고 건별 평균 액수가 1천만 원을 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는데,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이들 퇴직연금제도를 더 많이 도입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23). 중윗값도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높게 나타났다.

퇴직연금 체불 완화 기능과 연관해 체불 항목별 발생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면 <표 3>과 같다. 체불 사유로 일시적 경영악화 비중이 가장 높고, 사실관계 다툼이나 사업장 도산·폐업도 주요

<표 2> 신고자별 DB와 체불 항목별 DB 결합 후 체불 금액 구분

(단위: 건, 억 원, 원)

		전체	임금	퇴직금	기타	퇴직연금
전체 : 금액 없음 포함	신고건수(건)	273,196	273,196	273,196	273,196	273,196
	합계(억 원)	17,845	9,746	6,838	1,261	452
		100.0%	54.6%	38.3%	7.1%	2.5%
금액 없음 제외	평균(원)	6,532,051	3,567,532	2,503,122	461,397	165,277
	신고건수(건)	273,196	223,331	76,308	34,984	4,213
	평균(원)	6,532,051	4,364,085	8,961,616	3,603,125	10,717,529
	중윗값(원)	3,240,000	2,466,373	5,699,638	1,673,850	6,140,265

주: 금액 없음 제외 신고 건수는 해당 급여가 포함된 신고 건수를 의미함.
자료: 임금체불 신고 DB.

<표 3> 체불 발생 사유(해당 급여가 포함된 신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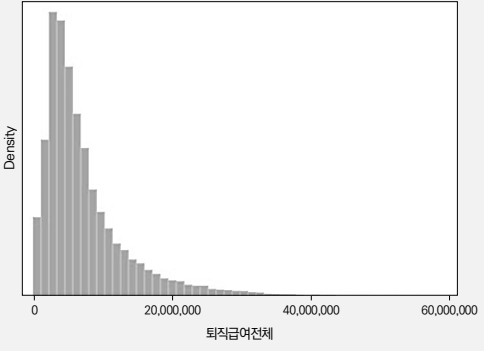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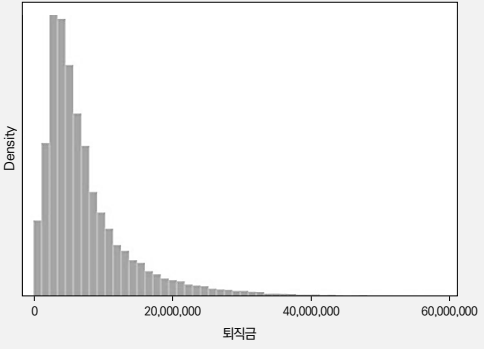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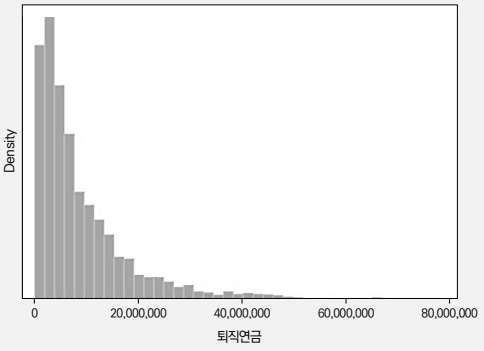
(단위: %)

	전체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임금
일시적 경영악화	64.7	65.1	57.6	70.0
사업장 도산·폐업	15.5	14.6	33.1	8.8
사실관계 다툼	12.7	13.1	5.1	13.8
법 해석 다툼	4.2	4.3	3.1	2.8
노사간 감정 다툼	2.3	2.4	0.8	3.9
근로자 귀책 사유	0.3	0.3	0.1	0.4
미입력	0.4	0.4	0.2	0.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주: 신고 건수는 해당 급여가 포함된 신고 건수를 의미함.
자료: 임금체불 신고 DB.

사유라는 점은 체불 항목과 관계없이 공통적이다. 다만, 임금에 비해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사업장 도산·폐업 사유 비중이 높으며,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도산·폐업 사유가 전체 사유의

[그림 1] 퇴직급여제도 체불 금액 분포 히스토그램 및 분위

퇴직급여 전체		
	분위	체불 금액(원)
	1%	330,575
	5%	1,377,465
	10%	2,117,112
	25%	3,400,000
	50%	5,724,753
	75%	10,161,004
	90%	18,519,951
	99%	55,993,053
퇴직금		
	분위	체불 금액(원)
	1%	347,455
	5%	1,438,732
	10%	2,152,174
	25%	3,410,430
	50%	5,699,638
	75%	10,000,000
	90%	18,151,719
	99%	54,969,862
퇴직연금		
	분위	체불 금액(원)
	1%	125,000
	5%	789,602
	10%	1,280,546
	25%	2,861,085
	50%	6,140,265
	75%	12,815,396
	90%	24,322,826
	99%	69,083,740

주 : 히스토그램은 상위 1% 이상치를 제외하고 도식화함.
자료 : 임금체불 신고 DB.

1/3 정도로 임금에 비해 세 배 이상, 퇴직금의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위 표에 서는 항목의 중복이 있을 수 있기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체불이 없는 임금, 임금과 퇴직연금 체불이 없는 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없는 퇴직연금도 확인해 보면, 사업장 도산·폐업 사유가 각각 6.1%, 9.2%, 25.9%로 나타나 그 경향성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앞의 <표 2>와 함께 이해해 본다면, 퇴직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산·폐업 전 단계에 서는 체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같 은 추론이 타당한 것이라면, 퇴직연금이 도산·폐업 이외에 다른 경영상의 변동 요인에 상대적 으로 영향을 덜 받는, 안전성이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퇴직급여제도 체불액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제시 한 히스토그램과 분위값은 전체 퇴직급여,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의 체불 규모 분포를 나타낸 다. 모든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증윗값까지 체불액이 5, 6백만 원을 나타내고 제3 사분위 값이

<표 4> 기업 규모별 체불 특성

		전체 퇴직급여(원)	퇴직금(원)	퇴직연금(원)
5인 미만	신고건수 비율	31.2%	32.4%	8.5%
	신고건별 평균	7,534,068	7,500,318	9,175,409
	신고건별 증윗값	5,030,122	5,021,185	5,201,208
5~29인	신고건수 비율	43.6%	44.1%	35.8%
	신고건별 평균	8,840,585	8,783,204	9,250,475
	신고건별 증윗값	5,867,343	5,856,506	5,310,205
30~99인	신고건수 비율	16.5%	15.8%	30.0%
	신고건별 평균	10,127,172	9,956,529	11,267,836
	신고건별 증윗값	6,440,025	6,311,939	7,492,154
100~299인	신고건수 비율	5.8%	5.1%	17.5%
	신고건별 평균	10,129,236	10,512,566	8,079,330
	신고건별 증윗값	5,879,596	6,043,538	4,556,874
300인 이상	신고건수 비율	3.0%	2.7%	8.2%
	신고건별 평균	20,860,038	20,615,708	22,287,287
	신고건별 증윗값	7,066,573	6,829,589	9,559,544
전 체	신고건수 비율	100.0%	100.0%	100.0%
	신고건별 평균	9,076,419	8,956,726	10,717,529
	신고건별 증윗값	5,722,492	5,696,694	6,140,265

주 : 신고 건수는 해당 급여가 포함된 신고 건수를 의미함.
자료 : 임금체불 신고 DB.

되어야 1천만 원을 넘는 것이 확인된다. 퇴직급여 체불액이 소규모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퇴직급여 체불에 있어서 7천만 원 이상은 상위 1% 내에 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체불액이었다.

이 체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기업 근로자수별 신고 건수 및 체불액을 확인해 보았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체불 신고가 있었으며, 이들 소규모 기업 체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임도 확인된다. 즉, 앞의 그림과 함께 이를 종합해 해석해 보면, 퇴직급여제도의 체불을 경험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작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소액의 체불을 경험하는 것이다.

한편,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해 보았을 때 퇴직금의 경우가 특히 5인 미만 기업에서 신고한 건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퇴직금의 경우 신고건 전체 중 32.4%가 5인 미만인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단 8.5%에 그쳤다. 실제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와 금액 간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여, 퇴직금이 앞서 언급한 경향, 즉 작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소액의 체불을 경험하게 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중도 높으며, 규모와 금액 간 상관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으로 확인된다. 정리하자면, 퇴직급여 체불을 경험하는 근로자들 상당수는 급여 액수가 크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퇴직금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격차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퇴직급여 체불 신고자 중에서 임금도 함께

<표 5> 퇴직급여 체불 신고자 중 확인가능한 2023년 월 임금 분포

분위 및 평균	전체 퇴직급여체불 월 임금(원)	퇴직금체불 월 임금(원)	퇴직연금체불 월 임금(원)
1%	230,880	230,880	331,046
5%	1,000,000	1,000,000	1,539,200
10%	1,575,000	1,539,200	1,855,930
25%	2,200,000	2,183,400	2,382,880
50%	2,860,150	2,828,560	3,161,920
75%	3,820,000	3,770,000	4,294,500
90%	5,000,000	5,000,000	5,846,160
99%	8,083,333	7,958,547	9,830,770
평균	3,135,729	3,092,809	3,555,812

자료 : 임금체불 신고 DB.

체불된 개인의 2023년 월 임금의 분포 및 정도를 <표 5>에서 확인해 보았다. 체불 항목별 DB 중 퇴직급여제도와 임금이 함께 체불된 사례가 확인되며, 이 중에서 월 임금 규모가 확인 가능한, 즉 2월은 28일, 그 외에는 30일 혹은 31일의 체불 기간이 명시된 약 2만 6천 명 신고자의

<표 6> 퇴직급여 신고건별 금액과 관련 요인 회귀분석 결과

		OLS 회귀계수 (강건표준오차)	음이항 회귀계수 (표준오차)	OLS 회귀계수(로그) (표준오차)
기업 규모(근로자 수)		12,999.7 ** (800.6)	0.0015665 ** (0.0000638)	0.0571598 ** (0.0020506)
성별(남=1)		2,164,297 ** (58,523.4)	0.2563898 ** (0.0056229)	0.2280519 ** (0.0058967)
연령(40~50대=1)		2,186,362 ** (58,060.5)	0.2642451 ** (0.0059231)	0.255516 ** (0.0062143)
지역	(수도권)			
	충청권	-731,111.6 ** (95,410.1)	-0.0775916 ** (0.0097952)	-0.0732684 ** (0.0102464)
	호남권	-1,050,279 ** (100,865.7)	-0.123783 ** (0.0106589)	-0.1351185 ** (0.0111593)
	영남권	-505,050.4 ** (70,566.4)	-0.0578123 ** (0.0069381)	-0.0765586 ** (0.007256)
	제주/강원권	-208,006.4 (173,785.3)	-0.0153919 (0.0170089)	-0.0112614 (0.0178025)
산업	(그 외 전체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105,780.6 (336,349.5)	-0.0259246 (0.0326666)	-0.1077723 ** (0.0342363)
	제조업	1,321,978 ** (69,224.6)	0.1659611 ** (0.0065936)	0.190386 ** (0.006946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37,774.4 (579,354.4)	0.0586631 (0.0453563)	-0.0783441 (0.0474757)
	건설업	325,782 ** (85,616.9)	0.060471 ** (0.0086025)	0.1791386 ** (0.009044)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1,172,792 ** (144,530.4)	0.1415767 ** (0.013962)	0.1741486 ** (0.0146093)
상수항		5,412,123 ** (53,195.43)	15.55257 ** (0.0060637)	15.1415 ** (0.0075742)
N		75,943	75,943	75,755
F, LR x2		330.59 **	6221.35 **	534.84 **
R2, Pseudo R2		0.0540	0.0024	0.0781

주 : OLS 회귀계수(로그) 모델에서는 기업 규모도 로그를 취함.

* p<.05, ** p<.01.

자료 : 임금체불 신고 DB.

임금 정보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본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임금은 연차수당, 상여금, 그 외 기타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적 전체 임금이라 보기는 어렵겠지만, 분석 결과 퇴직연금 체불 신고자의 월 임금이 퇴직금 신고자보다 전체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 체불 경험에 있는 신고자 전체 개인의 평균임금은 31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와 신고건별 금액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앞서 [그림 1]의 기술 분석을 통해 확인된 체불액의 비정규 분포하에서, 회귀분석의 가정에 최대한 부합하고 또 모델 적합성 증진을 위해 퇴직급여 체불액 규모와 기업 규모에서 2%의 이상치를 제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원자료와 로그 변형을 활용한 최소자승법(OLS)과 원자료를 활용한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회귀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모델 간 차이를 비교 및 검증했다. 제시한 최소자승법 회귀분석 결과에서 다중공선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델에서 이분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강건표준오차를 활용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귀분석 결과는 분석모델과 관계없이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지역, 산업을 통제한 상황에도 기업 규모와 신고건별 금액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른 변수들의 관계도 살펴보면, 개인 속성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40,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체불액이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전체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더 체불액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이 충청, 호남, 영남권에 비해서 체불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임금체불 신고 DB를 통해, 기존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던 퇴직급여제도의 임금체불 현황을 퇴직급여제도 종류별 특성과 격차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았다. 먼저 제도 종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비해 체불 신고 건수나 총액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산·폐업 이전 단계에서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퇴직연금이 체불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도라는 통념을 증명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격차와 관련하여, 퇴직급여 체불 신고 규모 중윗값은 6백만 원이 되지 않았으며, 그 분포에 있어 소액 체불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용한 자료로 분석해 보면, 이들 퇴직급여 체불자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중윗값은 3백만 원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신고 체불액은

다른 요소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기업 규모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불 격차, 즉 퇴직급여제도의 체불을 경험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소규모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체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4]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4),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 9. 5.자 보도자료.

길현종 · 이승호 · 이영수(2024), 『퇴직급여제도 현황과 인식 : 수준과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김증호(2020), 「임금체불 관리 행정시스템 전환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0(2). pp.185~226.

임무송(2020),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산업관계연구』 30(1), pp.151~176.

통계청(2023), 「2022년 퇴직연금통계」.

고용노동부, www.moel.go.kr(검색일 : 2024. 11. 2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검색일 : 2024. 11. 23.)

빅카인즈, www.bigkinds.or.kr(검색일 : 2024. 11. 23.)